

2024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사항 신·구 대조표

※ '23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과 비교하여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구 수정, 글상자 표시, 일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신·구 대조표에 언급하지 않음

쪽 ('24 기준)	기존	개정	사유
3	- 독립 영농경력 :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	- 독립 영농경력 :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	○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시행령 제2조를 반영하여 수정
7	<p>3. 사업신청</p> <p>시·군·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·달된 지침을 참고하여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여 모집·접수 * 시·군·구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선발대상·절차 등을 게시·공고 및 홍보 ** 주요 공고 내용 : 목적, 신청자격, 신청기간, 접수처, 선정절차 및 일정 등(시·군·구 등 사업시행기관은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) <p>< 신설 ></p> <p>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</p> <p>< 신설 ></p>	<p>3. 사업신청</p> <p>시·군·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·달된 지침을 참고하여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여 모집·접수 * 시·군·구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선발대상·절차 등을 게시·공고 및 홍보 ** 주요 공고 내용 : 목적, 신청자격, 신청기간, 접수처, 선정절차 및 일정 등(시·군·구 등 사업시행기관은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) ○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에 입력된 사업신청자의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 인지 확인 후 최종 접수 <p>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위한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, 신청·접수 현황을 수시로 확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을 접수할 예정

쪽 (‘24 기준)	기존	개정	사유
1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등 < 경종분야 > ○ 묘목 및 종자(화훼묘 포함) 구입비 < 신설 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등 < 경종분야 > ○ 비료, 묘목 및 종자(화훼묘 포함) 구입비 * 묘목 구매 시 해당 품목과 경작지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종농가가 영농에 사용하는 비료를 기타자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목록에 추가 ○ 묘목 구매 시 경작지 규모에 맞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
19 ~ 20	<p>2. 용자 제외 대상사업 및 대상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업정책사업(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)으로 지원하는 용자(용자+보조 포함)사업의 자부담분 - 단, 용자가 없는 농업정책사업의 자부담분은 대출 가능 < 신설 > 	<p>2. 용자 제외 대상사업 및 대상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업정책사업(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)으로 지원하는 용자(용자+보조 포함)사업의 자부담분 - 단, 용자가 없는 농업정책사업의 자부담분은 대출 가능 * <u>다만, 농업정책사업 지원으로 인한 선순위 근저당 설정, 농신보 보증 미승인 등으로 인한 용자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및 대출취급기관, 농신보 등과 사전 협의 필요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출 실행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지침에 반영
62	<p>< 신설 ></p>	<p>3.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회수 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용자금을 활용하여 매입한 농지 등이 부득이하게 국가 및 지자체 사업추진에 따라 수용되었을 경우 - 다만, 해당 건 관련 상환된 자금과 동일한 지원 분야 및 세부 지원대상, 상환규모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* 추가지원 시 실제 대출금액은 개인신용, 담보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출취급기관 등과 사전 협의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득이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영농기반을 강제 수용 받았을 경우 추가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명시